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호로 2022년 9월 18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나.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3)

다. 환경공무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변경(안 제8조)

라. 다른 조례에서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안 부칙 제2조)

마.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9. 14. ~ 9. 1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며,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가.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현행 법령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정부에서 환경미화원 명칭을

공공과 민간영역 구분 없이 일괄 지정하여 30년이 넘게 사용되어 온 용어로,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2016년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본 조례도 청소노동의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것임.
- 서울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관련 조례의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개정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순번	조 례 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2021.12. 3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9. 23.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2021.12. 31.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2021.10.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2022. 5. 6.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2022. 5. 12.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2021.12. 30.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2021. 9. 30.

나.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3)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임.

다.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 확대 (안 제8조)

- 환경미화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함.

라.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모든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